

울산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1가합1643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우

담당변호사 김주성

변론 종결2024. 9. 4.

판결 선고2024. 11. 20.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1) 2019. 5. 31. 체결된 50,000,000원의, (2) 2019. 7. 16. 체결된 224,000,000원의, (3) 2019. 7. 17. 체결된 28,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국민건강보험의 자격관리, 건강보험료 부과 및 징수, 부당이득금의 결정과 징수, 요양기관이 정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건강보험업무를 처리하는 특수 공법인이다. C은 의료법인 D의 E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한 사람이고, B은 C과 남매 사이이며, 피고는 B의 딸이다.

나. 원고는 2018. 7.경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하였고, "C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면서도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을 개설하였다"고 의심된다는 사유로 2018. 8. 29. 경북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위 수사 결과를 2019. 12. 30. 회신 받았다.

다. B은 2019. 5. 2. 경주시 F답 2,007m²(이하 '이 사건 경주 토지'라 한다)를 G에게 1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G은 B의 요청에 따라 2019. 5. 31. 위 매매대금 중 50,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H으로부터 2019. 5. 20. 포항시 북구 I아파트 J호(이하 '이 사건 포항 아파트'이라 한다)를 224,000,000원에 매수하였다. B은 H에게 2019. 5. 16. 2,000,000원, 2019. 5. 20. 20,000,000원, 2019. 5. 29. 10,000,000원 합계 3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B은 2019. 7. 16. K1)에게 195,381,000원을 이체하였고, K은 같은 날 H에게 192,231,000원(= 13,652,094원 + 178,578,906원)을 송금하였다.

마. B은 2019. 5. 22. 울산 중구 L아파트 M호(이하 '이 사건 울산 아파트'라 한다)를 N에게 386,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9. 7. 16. 잔금 346,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바. B은 2019. 7. 17. 피고에게 2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B에 대하여 2021. 2.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2020고합 7). 이에 B이 항소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은 2021. 12. 15. 항소를

기각하였고(2021노 115), B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23. 10. 26.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같은 날 위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2022도90, 이하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 관련 형사소송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범죄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피고인 C

가. 의료법위반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책임 아래 의사를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3. 5.경 가족인 O, P, B, Q에게 요양병원 설립 계획을 설명하여 자금을 출연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O, P, B, Q로부터 각각 1억 6,000만원(합계 6억 4,000만원)을 출연 받아 포항시 북구 R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후 위 토지에 병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의료법인 D의 재산으로 기부하고, 사실은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뒤 피고인의 가족을 이사로 선임하여 이사 급여 명목으로 각 가족에게 월 500만 원씩 병원 수익을 배분할 생각이었음에도 2014. 1.경 지인인 S, T, U, V을 형식상의 이사로 내세워 경상북도에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설립발기인 명단 등을 제출하여 2014. 2. 7. 경상북도로부터 의료법인 D의 설립허가를 받고, 같은 달 13. 포항시 북구 W에서 의료설비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을 갖춘 후 E요양병원이라는 명칭으로 병원을 개설하여 2019. 9.경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3.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위 가. 항과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E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의사들을 고용한 후 이들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는 등 E요양병원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를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16,694,427,000원, 의료급여비 3,321,808,650원 등 합계 20,016,235,65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X, 피고인 Q, 피고인 B, 피고인 P, 피고인 O

피고인들은 2013. 5.경 C와 함께 중국에서 가족 여행을 하던 중 C에게서 요양병원 설립 계획을 듣고, C에게 병원 부지 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고 의료진을 모집하는 등 도움을 주고 C이 요양병원을 운영하여 얻는 수익을 분배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C이 제1의 가. 항과 같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인 E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제1의 나. 항과 같이 E요양병원이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를 청구하여 합계 20,016,235,650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X은 E요양병원 개설에 필요한 간호사를 모집하고, 피고인 Q, 피고인 B, 피고인 P, 피고인 O는 C에게 각각 160,000,000원을 출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의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아. 원고는 2020. 1. 22. 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요양급여비 환수 결정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결정'이라 한다).

제목: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통보

2. 관련근거

○ 민법 제750조

202001-41-50000035933	2,111,801,830	개설기준위반	현금고지
202001-41-50000035936	3,294,198,490	개설기준위반	현금고지
202001-41-50000035939	3,324,894,970	개설기준위반	현금고지
202001-41-50000035942	2,907,050,900	개설기준위반	현금고지
202001-41-50000035945	3,440,974,290	개설기준위반	현금고지
202001-41-50000035961	2,069,862,700	개설기준위반	현금고지
계 : 6건	17,148,783,18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3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Y, 주식회사 Z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은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위와 같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그 고용된 의사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국가가 헌법상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원리에 기초하여 요양급여대상을 법정하고 이에 맞추어 보험재정을 형성한 국민건강보험 체계나 질서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 참조).

나)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같은 조 제3항의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5850 판결 참조).

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B은 2014. 2.경부터 2019. 9.경까지 C의 이 사건 병원의 개설, 운영이나 요양급여비용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이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B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환수결정액인 17,148,783,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위 액수 상당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본다.

3)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위해 지출되었고, 환자들이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 받지 않았더라도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것이어서 원고가 동일한 지출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원고의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사실 자체로서 손해를 입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위 주장은 가정적 상황에 터 잡은 것일 뿐 B 등의 불법행위가 없더라도 원고가 동일한 지출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기록상 찾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주장

피고는, B이 요양기관을 개설한 C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고 요양기관인 이 사건 병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지급결정이 취소되지도 않았으므로, B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환수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어 원고의 B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B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환수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병원과 관련한 수사를 의뢰하였을 무렵에는 B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알았을 것인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B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별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원고가 2018. 7.경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2018. 8. 29. 경북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2019. 12. 30. 위 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회신 받은 사실은 앞서 보았고, 원고가 2021. 11.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2022. 3. 28. B 등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합50667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며, 그 인식은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본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의 위법성을 확인하고자 수사를 의뢰한 것이므로, 당시에는 B의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후 원고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결과를 회신 받은 2019. 12. 30.로부터 3년 내인 2021. 11. 1. B에 대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2022. 3. 28. 제기된 위 별소를 기준으로 하여도 위 수사결과회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마찬가지이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2) 피고에 대한 증여에 관한 판단 가) 2019. 5. 31. 피고에게 송금된 50,000,000원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경주 토지의 매도인인 B의 요청에 따라 매매대금 중 50,000,000원이 매수인인 G으로부터 피고에게 송금되었고, 위 돈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음이 인정되므로, B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19. 5. 31.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2019. 7. 16.까지 H에게 송금된 돈 중 224,000,000원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이 사건 포항 아파트의 매수인은 피고임에도, B은 위 아파트에 관한 2019. 5. 20.자 매매계약을 전후하여 매도인 H에게 2019. 5. 16. 2,000,000원, 2019. 5. 20. 20,000,000원, 2019. 5. 29. 10,000,000원 합계 32,000,000원을 송금하였고, ○ 2019. 7. 16. K에게 195,381,000원을 이체하였으며, K은 같은 날 H에게 위 195,381,000원 중 192,231,000원을 'A잔금', 'H대출상환', 'H말소비'의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포항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피고를 대신하여 H에게 지급하였다고 넉넉히 추인할 수 있으므로, 사정이 이와 같다면 늦어도 B이 매도인에게 이 사건 포항 아파트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등 비용 지급을 완료한 2019. 7. 16.에는 피고에게 합계 224,231,000원(= 32,000,000원 + 192,231,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포항아파트의 매매대금 액수인 224,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2019. 7. 17. 피고에게 송금된 28,000,000원

앞서 본 것과 같이 B이 위 일자에 피고에게 위 돈을 송금하였고, 위 돈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음이 인정되므로, B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19. 7. 17. 피고에게 28,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B과 피고 사이의 위 가), 나), 다)항 기재 증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B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환수결정액인

17,148,783,1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에 반하여, 적극재산으로 아래 표와 같이

486,000,000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대금 또는 매매대금 채권만을 소유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B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음은 분명하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1	이 사건 경주 토지 매매대금 채권	100,000,000
2	이 사건 울산 아파트 매매대금 채권	386,000,000
합계	486,000,000	

앞서 보았듯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이미 2018. 7.경 행정감사를 실시하였고 2018. 8. 29.

수사를 의뢰하였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B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수사에 따라

원고로부터 부정수급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환수처분이 있을 것을 예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B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부친 AA의 사망 후 상속재산을 임시로 B의 단독 명의로

두었으나 이후 피고의 요구에 따라 B이 상속재산 분할의 일환으로 피고에게 또는 매수인인 피고를

대신하여 위 각 송금을 한 것일 뿐, 피고에게 위 각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AA이

2016. 7. 19. 사망한 후 2016. 9. 8. 이 사건 경주 토지 및 2016. 9. 9. 이 사건 울산 아파트에

관하여 각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하여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B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개시 즈음인 위 등기경로일 무렵 완료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② AA의 사망일로부터 3년이 지나 이 사건 병원과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 피고가 B에게

상속재산의 분할을 요구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의

법정상속분은 최대 2/7로 보이냐2), 상속재산인 이 사건 경주 토지의 매매대금 100,000,000원 및 이 사건 울산 아파트의 매매대금 386,000,000원 중 피고의 상속분을 훨씬 상회하는 돈이 피고에게 또는 매수인인 피고를 대신하여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취소채권자인 원고에게 302,000,000원(= 2019. 5. 31.자 증여 50,000,000원 + 2019. 7. 16.자 증여 224,000,000원 + 2019. 7. 17.자 증여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재판장판사이연진

판사하대경

판사전정우

1) 원고의 2023. 8. 29.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K은 이 사건 포항 아파트 인근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로서 이 사건 포항 아파트의 매수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인다.

2) 갑 제1호증 기재 및 피고 2024. 3. 5.자 준비서면 내용에 의하면 망 AA의 상속인으로는 적어도 배우자 B, 자녀 AB와 피고가 있다고 보인다.